

## 이천시통·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1. 主要 法的根據

#### ◎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- 제4항 :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5항 : 동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·리(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들 수 있다.

### 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본 개정조례안은 설성면 금당3리의 신설에 따라 설성면 리장 정원 “35명”을 “36명”으로 하고, 현행 관할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는 통장 정수를 법정 동별로 세분화 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